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충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95 발의연월일: 2024. 6. 12.

발 의 자: 박충권·송석준·김승수

임이자 · 김위상 · 김성원

엄태영 • 권영진 • 유상범

서지영 • 박대출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,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.

그런데 미국,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,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.

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,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

임(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).
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국무총리"를 "대통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3 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

제4조제3항 중 "상임위원은"을 "상임위원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무 처장은"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"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"를 "대통령이"로 한다. 제17조제2항 중 "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"를 "위원장이 임명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종전의 법률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

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, 「원자력 손해배상법」, 「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, 「원자력안전법」 및 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」, 「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한 행정처분, 그 밖의 행위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위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제3조(사무처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 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이 법에 따라 새로이 사무처장이 임명될 때 까지는 이 법에 따른 사무처장으로 본다.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 중 "총리령"을 "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(이하 "위원회규칙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9조제6항, 제10조제3항, 제12조제2항, 제13조제1항, 제16조제3항 전단, 제18조의2제3항, 제20조의2제1항·제2항, 제21조제1항제6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3항 중 "총리령"을 각각 "위원회규칙"으로 한다.

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총리령"을 "원자력안전위원회

규칙(이하 "위원회규칙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, 제9조의2제3항, 제9조의3제1항, 제11조, 제12조제2항제2호, 제13조제2항 단서, 같은 조 제3항, 제14조, 제20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, 같은 조 제4항, 제21조제2항, 제29조제3항, 제32조제5항, 제35조제2항, 제35조의2제2항ㆍ제5항ㆍ제6항,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 중 "총리령"을 각각 "위원회규칙"으로 한다.

③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7호 중 "총리령"을 "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(이하 "위원회규칙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단서, 같은 조 제2항·제4항·제5항 및 제11조제1호 중 "총리령"을 각각 "위원회규칙"으로 한다.

제11조제2호 중 "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(이하 "위원회규칙"이라 한다)"을 "위원회규칙"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단서, 같은 조 제2항, 제15조제1항 단서, 제15조의2 전단, 제15조의4제5항, 제18조, 제19조제3항, 제20조제1항 단서, 같은 조 제2항, 제25조, 제28조제1항 단서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전단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, 제30조제1항 단서, 같은 조 제2항, 제35조제1항 단서, 같은 조 제2항, 제30조의2제1항 단서, 같은 조 제2항, 제31조제2항, 제35조제1항단서 · 제2항 단서, 같은 조 제3항, 제36조제1항제1호, 제39조, 제42조제1항 단서, 같은 조 제2항,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같은 조 제2항, 제46조제1호, 제49조, 제52조제1항제2호, 제52조제4

항, 제53조제1항 단서・제2항 전단・제3항 본문, 제54조제1항제6호, 같은 조 제3항, 제55조제2항제1호·제3호, 제58조, 제60조제1항 본문 · 단서, 같은 조 제3항, 제61조제1항 본문, 제63조제1항 단서, 같은 조 제2항, 제64조제1항제1호, 제67조, 제68조의3제1항 단서, 같은 조 제2항, 제68조의4제1항 단서, 같은 조 제2항, 제70조제2항·제4항, 제71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, 제74조제1항, 제76조제1항 본문・단서, 같은 조 제2항, 제77조의2제1항 단서, 같은 조 제2항, 제78조 제3항, 제79조제1호·제2호, 제82조, 제86조제2항, 제88조제1항, 제92조의2, 제94조제2호·제3호, 제100조제1항, 제103조제3항,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05조제3항, 제106조제3항 및 제112조 본문중 "총리령"을 각각 "위원회규칙"으로 한다.

④ 법률 제19826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7조의2제3항, 제88조제1항·제2항 및 제88조의2제2항 중 "총리 령"을 각각 "위원회규칙"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원자력	제3조(위원회의 설치) ①
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	
위하여 <u>국무총리</u> 소속으로 원	<u>대통령</u>
자력안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	
라 한다)를 둔다.	
② 위원회는 「정부조직법」	2
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	
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	
사항은 「정부조직법」 제18조	
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의2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7조
	의2제7항에 따른 한국원자력
	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
	<u>사항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・②	제4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상임위원은 「정부조직법」	③ 상임위원 및 제17조제2항에
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	<u> 따른 사무처장은</u>
이 된다.	
제5조(위원의 임명·위촉 등) ①	제5조(위원의 임명·위촉 등) ①

(생략)

- ② 위원장은 <u>국무총리의 제청</u> 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, 상임 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 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나 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③ (생 략)

제17조(사무처) ① (생 략)

-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, 사무처장
 은 <u>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</u>
 <u>다</u>.
- ③ (생략)

	(현행과 같음)	
	2	- <u>대통령이</u>
	③ (현행과 끝	
저]17조(사무처)	① (현행과 같음)
	2	
	위원장이 약	입명한다.
	·	

③ (현행과 같음)